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94 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김미애·백종헌·최형두

장종태 • 조승환 • 서지영

이인선 · 김예지 · 안상훈

한지아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,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, 향후 펜데믹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.

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4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3항 중 "감염병전문병원을"을 "감염병전문병원(이하 이 조에서 "감염병전문병원"이라 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"을 "감염병전문병원"으로 한다.

④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·운영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감염병병원) ①·② (생	제8조의2(감염병병원) 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	③
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	
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<u>감염병전</u>	<u>감염병전</u>
<u>문병원을</u> 설립하거나 지정하여	문병원(이하 이 조에서 "감염병
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	전문병원"이라 한다)을
원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④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효
	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
	병 정보 수집 • 분석 • 활용을 위
	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
	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
	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
	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
	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
	계하여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⑤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	⑥ 감염병전문병원
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	
<u>염병전문병원</u> 을 설립하거나 지	
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	
차, 방법,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